

■ 전매 접수 방법

아래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오니 구비서류를 확인하시어 매도인/매수인 본인이 방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기간	접수시간	장소
2020. 12.11(금)~12(토)	오전 10시 ~ 오후 4시 (※ 점심시간 12:00~1:00)	수성센트럴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

■ 분양권 전매(명의변경)절차

순서	절차	세부사항
1	매매(중여)계약서 작성(매도·매수자간 매매/중여 등)	부동산 중개업소(매도인/매수인)
2	부동산실거래신고 후 필증 교부(*중여시 : 중여계약서 검인)	수성구청 토지정보과 ☎ 053-666-3072, 3073
3	권리의무승계 확인 및 전매신청(구비서류 지참) (사업자등록시)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[명의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]	수성센트럴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(매도·매수인 방문)
4	양도소득세 신고 : 양도일로부터 60일(중여시 90일이내)	주소지 관할 세무서(매도인)

■ 구비서류(권리의무 승계)

구분	매도인	매수인
공통 사항	① 신분증 ②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)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매매계약서1부,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또는 검인계약서(중여시) 1부	
본인 방문시	① 분양계약서 원본 ②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발급) 1부	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발급) 1부
대리인 방문시	※ 대리불가 매도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	상기 본인서류 외 ① 위임장 1부 ② 매수인 인감증명서 1부(위임용, 본인발급분) ③ 대리인 신분증, 도장

※ 유의사항

- ① 분양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합니다.
(잔금완납 이전까지 분양권 전매 가능, 잔금완납시 취득으로 간주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후 매매가능)
- ②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며, 반드시 공급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③ 승인된 매수예정자 임의 변경 불가하며 변경시 재신청 접수 이후 가능합니다.

■ 분양권 전매시 유의사항

- ※ 분양대금(2차계약금) 연체세대는 미납된 분양대금 납부 후 명의변경 가능합니다.(미납시 전매동의 불가)
- ※ 수탁사, 위탁사 날인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서는 당일 수령이 불가합니다.
- ※ 수탁자, 위탁자의 직인이 없는 명의변경은 무효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소유권 이전 등기시 기 계약자의 실거래필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사오니 분양권 전매시 관련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전매 확인용 제출서류에 대해 복사/재발행은 불가합니다.
- ※ 기타 문의 사항은 분양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.

(문의: 053-763-7751)